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가정방문형 급여]

2026. 9.

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기준 위반 [방문상담 기준 위반]

부당사례1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보호사 A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면서,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총 3개월 연속 급여관리 업무 수행을 누락하여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 없이 급여비용의 100%를 청구하여 지급받음.

부당사례2

○○방문요양기관은 20**. *. 등 총 **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D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면서,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자*가 아닌 기관의 시설장이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음.

*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약 60명임에도 사회복지사를 미배치 함

부당사례3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 E가 총 *개월 동안,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에 대하여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 *명에 대하여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100% 산정하여 청구하여 지급 받음.

적용
기준

-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에 따라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급여관리 업무수행을 누락하는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여야 함.

관련
근거

-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2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부당사례

○○○○노인복지센터는 실제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시간보다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수급자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1회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부당사례

○○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은 서로 가족관계인 수급자들에게 교차하여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태그 전송하였으나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들고 다녔으며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시간에 맞춰 태그 전송하거나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 가정방문급여는 등록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RFID 전송 포함)에 사실대로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청구해야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부당사례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 A와 수급자 B의 실 거주지가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C가 20**년 *월*일 등 (총 *회) 동일한 날짜에 사회복지사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인의 수급자에 대하여 원거리교통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음.

적용
기준

- 고시 제21조(원거리 교통비용),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및 세부사항 제6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원거리교통비용 신청, 중단 및 변경절차 등)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방문 당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요양보호사 1인이 수급자 사이의 거리가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만 산정하여야 함.

관련
근거

- 고시 제21조(원거리 교통비용),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및 세부사항 제6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원거리교통비용 신청, 중단 및 변경절차 등)

부당사례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 C에게 20**.**.부터 20**.**.까지의 기간 동안 총 ***회에 걸쳐 계획된 급여제공시간에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총 **회에 걸쳐서는 이동보조 등 일부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B와 함께 방문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RFID포함)를 작성(전송)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적용
기준

- 고시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등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고 급여의 내용 및 시간을 급여제공 기록지(RFID 포함)에 사실대로 작성(전송)한 후 이를 근거로 정확하게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부당사례

○○재가기관의 시설장 B는 실제 근무시간과 전산에 등록된 근무시간이 달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 고시 제54조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고시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하고,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함.

관련
근거

-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제50조(근무인원),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53조(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부당사례

○○방문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 B에게 인지활동형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지자극활동은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60분 이상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음.

적용
기준

-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5항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수급자 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3항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 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